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동행안내원 배치 의무화〉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61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장애인동행안내원 배치 의무화 등(안 제9조 의3)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1. 22.
3. 회 부 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련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문화 향유 프로그램의 운영·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설별 또는 지역별로 이행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전담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와 문화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III. 검토의견

1.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장애인동행안내원 배치 의무화 등 (안 제9조의3)

개정안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등 특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안 제9조의3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과 동행하며 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하 “장애인동행안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3항).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동행안내원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장애인동행안내원의 업무, 자격, 배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제4항·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 -----

현행	개정안
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u>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u>	----- ----- ----- ----- <u>제공하여</u> <u>야 한다. <후단 삭제></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용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과 동행하며 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하 “장애인동행안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u><신설></u>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동행안내원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u><신설></u>	⑤ 그 밖에 장애인동행안내원의 업무, 자격, 배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9조의3제1항¹⁾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의 유형 등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이 장애인에게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²⁾으로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³⁾에 따른 것임.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4)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5)는 재화·용역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 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와 제24조⁶⁾에 따르면 장애인이 정

-
-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문화기본법」⁷⁾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⁸⁾에서의 정보 접근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법의 박물관

7)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8)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미술관의 편의제공과 전담인력 관련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설별 또는 지역별로 이행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나 전담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고 장애인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공립박물관·미술관에 음성안내기 설치, 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디지털 기술·장비 활용 장애인 등 이용자 전시관람환경 개선을 지원해 왔으나,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57.4%에 불과한 상황임.⁹⁾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언적 규정(“...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편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과 동행하며 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9)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12. 26.

장애인동행안내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들도 신체적·정신적 조건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서적·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고,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인 문화향유권¹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동행안내원의 확보와 배치는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문화향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더욱이, 최근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¹¹⁾ 장애인 중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경험자의 44.8%는 무인정보단말기로 직접 주문하는 것보다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여전히 장애인들에게는 보조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장애인동행안내원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 등을 보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10)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 8. 7.

아울러, 안 제9조의3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동행안내원을 배치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박물관·미술관에 비하여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¹²⁾에서의 장애인 편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안 제9조의3제3항은 장애인동행안내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¹³⁾는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등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¹⁴⁾는 장애인 편의제공 시설의 규모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을, 전시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동행안내원을 배치해야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규모를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내에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여건을 고려할 때 장애인동행안내원의 상시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예산, 인력 운영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특히, 현재 국립박물관의 경우 안내데스크 인력,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장애인 관람객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에 있는 국립박물관의 경우 전담인력을 배치할 정도로 장애인 관람 수요가 많지 않고,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보안관리를 위한

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현장 운영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 지원 전담 인력을 의무화하는 것은 인력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대신 국가 등의 재정 지원 범위를 장애인 편의 제공 전반에 필요한 경비로 확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여건에 맞게 촉각물 전시, 수어 키오스크 및 음성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